■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[별지 제7호서식]

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신청자</td><td>성명
(법인명)</td><td></td><td>부적합 통보
문서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연락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부적합품 처리 고지 내용
(출하가능일)</td><td colspan="4">① 고지내용 : 출하연기
② 출하가능일 :　　년　　월　　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신청사유</td><td colspan="4">①[　　]유해물질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 분석기관의 증명서 첨부

②[　　]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
※ 출하가능일 1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
예) 출하가능일이 ‘23.3.30. 경우 ‘23.3.20.전에 신청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「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조사를 신청합니다.

2023년　00월　00일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조사기관의 장　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첨부: 증빙자료(공인분석기관 증명서 또는 잔류농약 감소 조치 내역 등) 1부</td></tr>
</table>